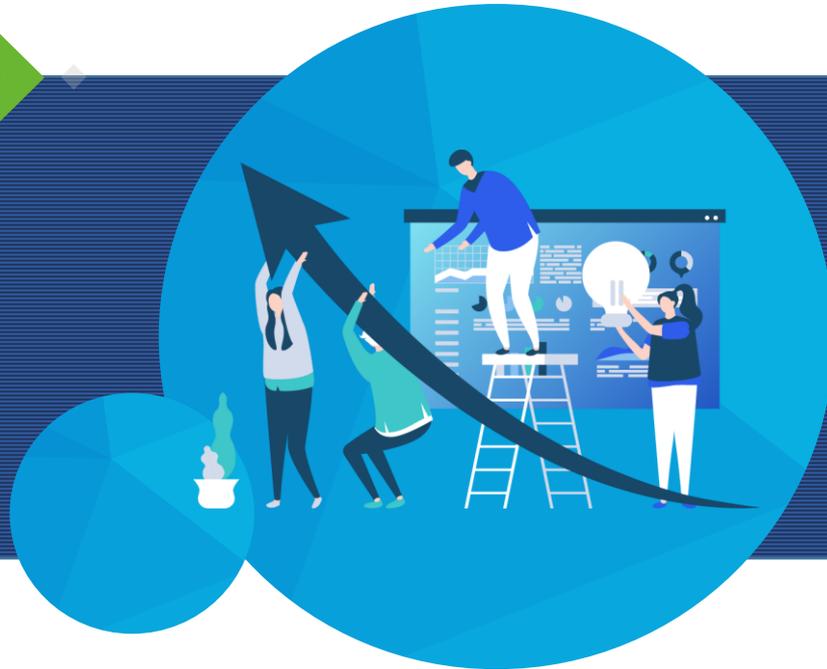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수·위탁거래 공정화 교육**



# Contents



I. 수탁·위탁거래의 정의 및 관련 법률 비교 3

II. 수탁·위탁거래 기업 준수(의무) 사항 12



III. 법위반에 대한 제재 및 기타사항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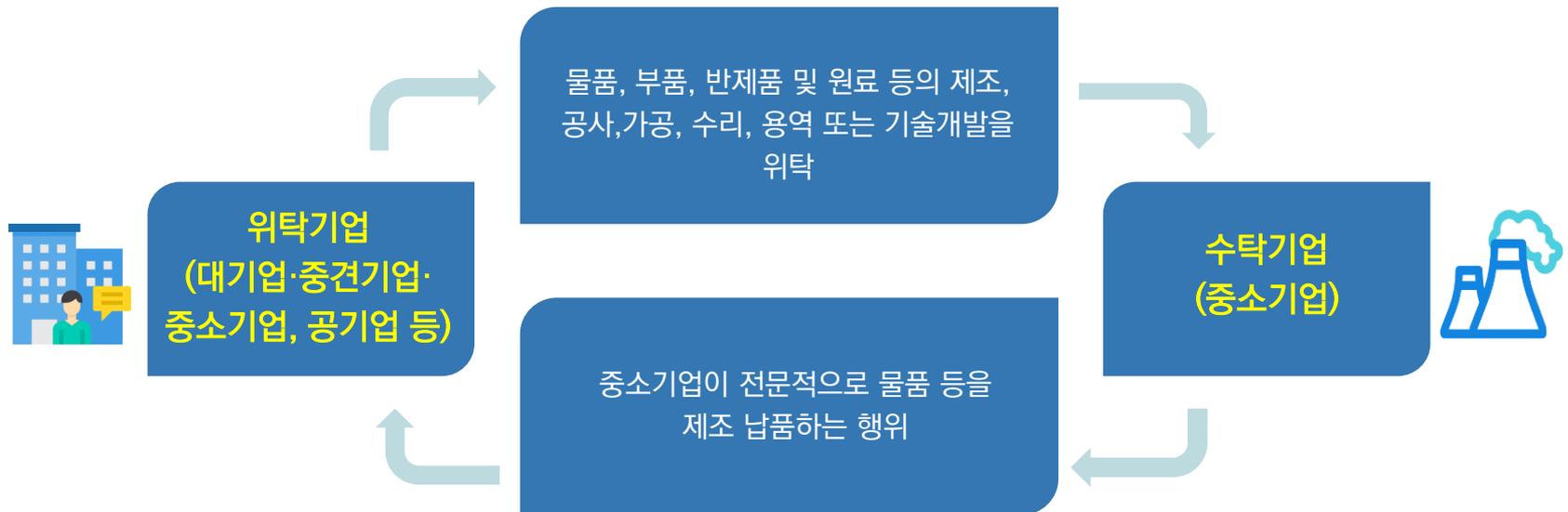


# I. 수탁·위탁거래의 정의 및 관련 법률 비교



# 수탁·위탁거래의 정의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게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상생법(이하, ‘법’) 제2조 제4호]



‘업으로 하는 자’의 판단 기준 : 사업자등록 여부, 해당 업에 대한 매출 발생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수탁·위탁거래의 적용대상



## 위탁기업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

- ✓ 외국법인도 무방하고, 수탁기업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많을 것을 요구하지 않음



## 수탁기업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을 받아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의미

- ✓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적을  
것을 요구하지 않음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중견기업도 수탁기업에 포함

# 수탁 · 위탁거래 예시



## 수탁 · 위탁거래에 해당하는 것의 예시

- 유통업체가 자사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PB상품의 제조위탁)
- 제조업자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냉방장비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이에 따른 설치도 같이 위탁하는 경우
- 대형마트가 삼겹살을 판매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고기를 특정 부위별로 절단, 분할 혹은 포장해줄 것을 위탁하는 경우



## 수탁 ·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예시

- 건설회사가 중소기업에게 인력의 파견을 요청하여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건설회사의 지휘·명령하에 파견인력을 근로하도록 하는 경우
- 식품회사가 대리점 계약을 통해 상품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 상생법(중기부)과 하도급법(공정위)비교 - 적용대상



## 상생법(수탁·위탁거래)

대기업·중소기업간 및 중소기업간  
모든 수탁·위탁거래

\* 중견기업도 일정 요건 하에 수탁기업에 포함 가능

매출액, 종업원수 제한없이 적용 가능



## 하도급법(하도급거래)

- 대·중견기업 → 중소기업
- 대기업 →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 2조원 초과 중견기업 → 8백억~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대금지급에 한해 하도급거래 인정)
- 중소기업 →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인 경우 : (매출액)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2. 일정 매출액 이하 중소기업 제외:
    - 제조·수리위탁(30억원 미만), 건설위탁(45억원 미만), 용역위탁(10억원 미만)



# 준수(의무)사항 비교



## 상생법(수탁·위탁거래)

- 하도급법 동일적용 사항
  - 약정서 및 수령증 발급(제21호)
  -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제21조의2)
  - 납품대금의 지급 등(제22조)
  -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제22조의2)
  - 납품한 물품등에 대한 검사의 합리화(제23조)
  - 기타 준수사항(제25조) :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부당한 물품수령 거부 및 납품대금 감액/  
 납품대금 지연지급/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부당한 물품  
 등의 강매/ 추가 납품대금 미지급/ 할인 불가능한 어음  
 지급/ 부당한 발주물량 감소 및 중단/ 대물변제 요구/  
 부당한 내국신용장 개설 기피/ 부당한 발주 기피/  
 부당한 검사기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보복조치 등의 금지

- 하도급법과 다른 사항
  -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제25조제1항제13호)



## 하도급법(하도급거래)

- 상생협력법 동일적용 사항
  - 서면의 발급(제3조)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제4조)
  - 구매강제(제5조)
  - 내국신용장의 개설(제7조)
  -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제8조)
  -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제9조)
  - 감액금지(제11조)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제12조의3)
  - 하도급대금의 지급·조정(제13조, 제16조, 제16조의2)
  - 부당한 대물변제(제17조)
  - 보복조치등의 금지(제19조)
- 상생협력법과 다른 사항
  - 선금금의 지급(제6조)
  - 부당반품의 금지(제10조)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제12조)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2조의2)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3조의2)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제18조)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4조)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15조)
  - 탈법행위의 금지(제20조)

※ 대·중견기업 간 및 중견·중견기업 간 하도급거래는 제13조, 제19조, 제20조만 적용

# 준수(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조치



## 상생법(수탁·위탁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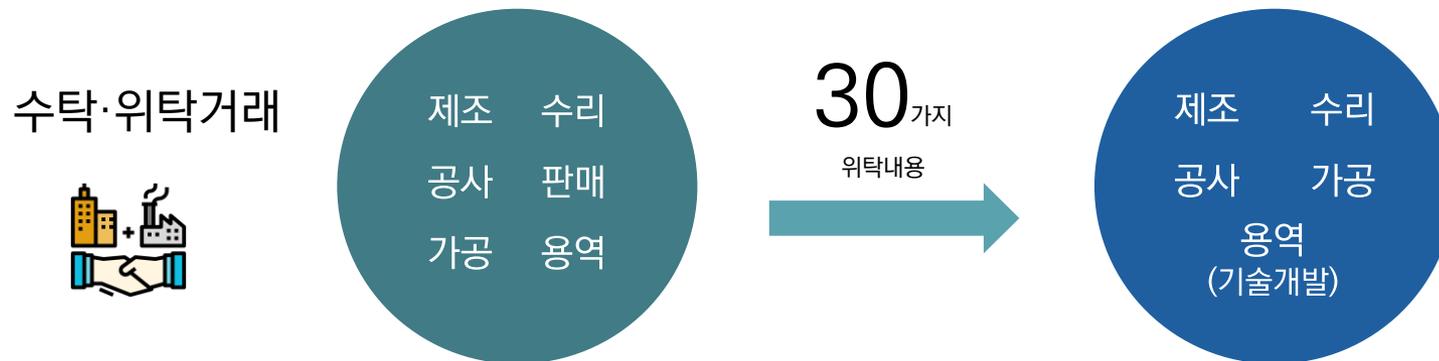
- 행정적 제제(벌점에 따른 조치)
  - (교육명령) 1회 2점 이상 또는 3년 누산 4점 이상
  - (입찰참가자격제한) 3년 누산 5점초과
- 벌칙 등
  - (벌금) 공표 후 1개월 이상 분쟁조정 시정명령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교육명령 미이행 : 500만 원 이하 / 서류미비치 : 500만 원 이하 / 조사 시 자료제출 거부 또는 거짓 제출, 조사방해 등 : 1천만 원 이하 / 약정서 미발급 : 1천만 원 이하
  - (과징금) 없음



## 하도급법(하도급거래)

- 행정적 제제(벌점에 따른 조치)
  - (입찰참가자격제한) 3년누산 5점 초과
  - (영업정지요청) 3년누산 10점 초과
- 벌칙 등
  - (벌금) 서면미교부, 부당대금결정/감액, 부당위탁취소 등 :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징역형 없음) / 법위반 신고, 납품대금조정신청 등 보복행위 : 3억 원 이하 / 부당경영 간섭, 탈법, 시정명령 미이행시 : 1.5억원 이하
  - (과태료) 출석거부, 자료미제출, 거짓제출 : 2천만원(최대1억원) \* 개인 2백만원(최대 1천만원)
  - 조사거부·방해 : 1억원(최대 2억원) \* 개인25백만원(최대50 백만원)
  - 서면조사 자료 미제출 : 1백만원(최대5백만원)
  - 질서유지명령 거부 : 50만원(최대1백만원)
  - (과징금) 5억원 이하 \* 다만, 위반금액의 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내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 상생법(중기부)과 하도급법(공정위)비교 - 거래관계



\* 위탁기업과 위탁대상의 관계가 30가지 가능



## II. 수탁·위탁거래기업 준수(의무) 사항



#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 약정서 발급의무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의 위탁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일, 검사방법, 납품하는 방법과 시기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법 제21조 제1항)

### <적법한 약정서발급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수위탁공정화지침에서 규정한 약정서 필수기재사항을 담은 경우
- 거래가 빈번한 계속적거래 계약에 있어 계약서에 수량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수량에 대한 내용을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고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수령증 발급의무

-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받으면 물품 등의 검사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수령증을 발급(법 제21조 제2항)

## 비밀유지계약 체결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비밀유지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법 제21조의2)

#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 납품대금 지급의무

-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지급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지급**(법 제22조 제1항)



- ✓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품 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때에는 물품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함(법 제22조 제2항)
-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법 제22조 제3항)
-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법 제22조 제4항)

## 위반 예시

물품 등을 받은 후 위탁기업이 임의로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물품 등의 하자가 있고,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하여 위탁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다루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납품대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건설위탁 시 수령한 물품 등에 대한 대금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대금 법정 지급기일 이후 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4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 납품대금의 조정 의무

-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납품대금조정 신청을 받으면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됨(법 제22조의2제7항)
- ✓ 수탁기업은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 등의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22조의2 제1항)
- ✓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음(법 제22조의2 제2항)
- ✓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22조의2 제8항)

## 위반 예시

법 제22조의2에 따른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납품대금조정협의를 개시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공급원가 산정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용할 수 없는 조정안을 반복하여 제시하는 경우

# 수 · 위탁 분쟁조정사례

## 납품대금조정에 대한 사례

### 기업개요

[위탁기업]

A사(대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수탁기업]

B사(중소기업)

고무제품 제조업



### 거래관계 및 사건개요

- B사는 A사로부터 자동차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
- B사는 인건비 및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14차례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
- A사는 납품대금조정금액으로 4,500만 원을 제시 \* B사 추가비용 청구액(약 8,200만 원)
- 한편, B사는 A사에게 납품하는 부품 중 일부 설계변경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A사는 위 부품 관련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회사와 거래
- 이에, A사의 행위가 상생법상 부당대금결정 및 부당발주중단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분쟁조정을 신청

### 조정경과 및 내용

- 분쟁조정 접수
- 사실조사 및 소명자료 검토
- 자율조정회의 등을 통한 이견 조정 (총 14회)
- 분쟁조정소위원회를 통한 조정권고안 도출
- 대금인상 최종합의
- **(조정결과) 3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17~47% 인상합의**



#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 검사의 합리화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 위탁기업은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 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법 제23조 제1항)
-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에 통보(법 제23조 제2항) **10일 이내 통보 원칙**
-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금지(법 제25조 제1항 제11호)

## <물품 등의 불합격 사유 통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불합격 사유 통보하는 문서에는 다음사항이 기재되어야 함(시행령 제15조)

- ✓ 물품 등의 납품 품명, 납품 수량, 납품 일자 및 검사 일자
- ✓ 불합격한 물품 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분석 결과

## 위반 예시

물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위탁기업이 임의로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에 의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공급한 원자재·부자재, 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되는 경우에도 수탁기업의 불합격 사유로 간주하는 경우

#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전단)

### ▶▶ 위법성의 판단기준

1. 물품 등 수령거부 행위의 위법성은 위탁계약 체결 및 수령거부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수령거부한 물품 등의 범위, 계약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함
2.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란 수탁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탁기업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 예시〉

- 수탁기업이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의 제조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 받았음에도 수탁기업이 조달하기로 한 원재료를 제때 조달하지 못하는 등 수탁기업의 사정으로 해당 기간이나 계절을 넘겨 납품하는 경우

#### 위반 예시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목적물 등이 위탁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성능의 하자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물품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위탁기업이 물품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탁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금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후단)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할때 약정한 납품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는 행위

위탁기업이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통하여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25조3항)

### ▶▶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 경우의 예시

1.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회의록 등에 기재된 인하 단가의 적용일자를 합의일보다 이전으로 소급하여 명시한 경우
2. 위탁기업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계약내용보다 공사량 내지 원재료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시

1. 수탁기업이 계약한 물품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거나 수탁기업의 책임있는 사유로 물품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2. 수탁기업이 약정된 납기일을 위반하여 위탁기업이 지체상금약정에 의하여 대금을 깎거나, 예정된 일정대로 물품을 생산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만큼 대금을 깎는 경우

#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금지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같은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 ▶▶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기준

1.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해, 해당 위탁기업이 제3자에게 지급한 대가
2.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해, 해당 수탁기업이 제3자로부터 위탁 받아 지급받은 대가
3.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해, 해당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대가
4.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해, 해당 위탁기업이 해당 수탁기업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지급한 대가
5.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해당 물품 등에 대해 같은 종류 혹은 유사한 것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제조 원가에 해당 위탁기업이 거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거래유형에 속하는 수탁기업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률을 해당물품 매출액에 곱한 금액을 더한 대가
6. 기간 경과 등으로 당시의 제조 원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대금 협상 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탁기업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견적 금액

#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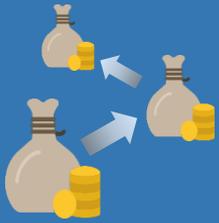


##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금지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위탁기업이 동일한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25조 제1항 제4호)

- ➔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에는 물가변동, 노무비, 원재료비, 경비 등의 공급 원가 변동 외에 위탁 내용 변경, 추가 위탁, 설계변경 등을 포함 \*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목적물의 완성 또는 완료를 위해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도 포함
- ➔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경제 상황 변동 등의 이유'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을 받은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 \* 내용이 불명료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금액의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
- ➔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경제 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납품 대금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에 있어 해당 납품금액이 발주자의 지급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지급한 납품 대금을 기준으로 증액
- ➔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경제 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위탁 약정을 이유로 증액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로 본다
- ➔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추가금액을 수탁기업에게 증액해주는데 있어서 대금증액 기준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대금증액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법 제25조 제1항 제5호)

“물품 등의 구매강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의 예시

- 계약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지정된 물품의 구매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발주자나 고객이 제조 등을 의뢰 시 특정 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경우

### ▶▶ 법이 금지하는 물품 등의 구매강제의 예시

1. 위탁기업의 구매나 외주담당자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구입목표액 등을 정하여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2. 수탁기업에게 목표량을 할당하여 구입을 요청하거나 특정 물품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불이익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 경우

**준수사항 위반**

#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 할인불가능 어음지급 금지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금지

법 제25조 제1항 제6호

“할인가능어음”이란 다음 금융기관에 의하여 어음할인 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발행·배서한 어음 또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

- 「은행법」 및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
-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감소 및 중단 금지

물품 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법 제25조 제1항 제7호)

### ▶▶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감소 및 중단 행위의 예시

1.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위탁기업의 경영상황 악화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임의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2. 위탁기업이 제조 등의 업무를 위탁기업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탁기업에게 대신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3.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감액 등의 요구를 하고 수탁기업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5. 물품 등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명백한 불량이나,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확인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 대물변제 금지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법 제25조 제1항 제8호)

### ▶▶ 금지되는 대물변제의 예시

1. 위탁기업이 아파트 공사를 위탁한 사안에서, 해당 아파트가 미분양 되었다는 이유로 수탁기업에게 대금 중 일부를 아파트로 제공하겠다고 요구하는 행위
2. 중소 의류 제조업체가 대기업 의류업체에게 아동복을 납품하였으나, 대기업 의류업체에서 물품 대금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재고의류로 변제하겠다고 요구하는 행위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 금지(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위탁기업은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탁기업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함

#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 부당발주기피 금지

물품 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법 제25조 제1항 제10호)

- ✓ “물품등의 제조를 의뢰” 한다는 것은 사전작업의 이행 등 납품을 위한 준비행위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
- ✓ “제조된 물품 등”이란 제조가 완료된 물품뿐만 아니라 제조가 일부 진행되어 부분 완료된 물품, 납품을 위한 준비행위 결과 등도 포함
- ✓ “기피하는 행위”란 제조된 물품등에 대해 발주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 발주를 지연하는 행위, 발주를 거부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

### ▶▶▶ 부당발주기피의 예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수차례에 걸쳐 기계 제조를 위한 승인도, 설계도 등의 각종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의뢰한 승인도, 설계도 등의 작업을 위하여 인력을 총원하는 등 위탁기업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교부하였으나, 위탁기업이 발주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 기술자료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법 제25조 제1항 제13호)



## 정당한 사유 있는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교부 의무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교부

- 이 경우 위탁기업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권원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 금지(법 제25조 제2항)

#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법 제25조 제1항 제13호의2호)



###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시행규칙 제5조의2)

1.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세부 지급내역 등 수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이라고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하여 납품하는데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2.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물품 등의 매출 관련 정보
3. 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등 수탁기업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
4. 거래처 명부,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납품조건 등 수탁기업의 영업 관련 정보
5.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 〈경영상의 정보 요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 받고 납품대금 조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원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 양산(量産)되지 않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한 위·수탁계약과 관련하여 정산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위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 보복조치 금지



수탁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 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 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법 제25조 제1항 제13호, 제14호)

1. 위탁기업이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2. 제22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제8항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 ✓ “관계기관에 고지하는 행위”는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동 뿐만 아니라 법 제28조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포함
- ✓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발주량 감소, 발주중단, 수주기회 제한, 협력업체 등록 거절, 타 수탁기업과의 거래조건 차별, 그 밖에 거래 조건을 수탁기업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모든 행위
- ✓ 보복조치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법 제40조의2)

### 불이익을 주는 행위 예시

그간 지급·제공하던 원재료, 자재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탁기업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신고로 시정조치를 받게 되자 1개월 후에 신고를 한 수탁기업의 내부 신용등급을 합리적 이유 없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행위

# 수탁기업의 준수(의무) 사항



## 품질보장 의무

수탁기업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 받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함(법 제24조 제1항)

수탁기업은 제품을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제도에 따라 적절한 가격결정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함(법 제24조 제2항)



## 약정위반 행위 금지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등의 품질·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법 제25조 제3항 제1호)



## 부당한 가격인상요구 금지

물품 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법 제25조 제3항 제2호)



## 질서 문란 행위 금지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법 제25조 제3항 제3호)



### III.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기타사항



# 상생협력법 위반에 대한 벌점 제도

## 벌점의 부과기준(시행규칙 제5조의4)

벌점은 법위반 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모두 합산

	행정 제재 유형	법 위반행위
가	서면 관련 위반	법 제21조 위반행위
나	납품대금 조정협의 및 납품대금 감액 관련 위반	법 제22조의2제7항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 / 법 제25조제3항 위반행위
다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22조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2호 위반행위 / 법 제25조제1항제4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6호 위반행위 / 법 제25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
라	보복조치 금지위반	법 제25조제1항제13호 위반행위 / 법 제25조제1항제14호 위반행위
마	기술자료 관련 위반	법 제25조제1항제12호 위반행위 / 법 제25조제2항 위반행위
바	그 밖의 위반	법 제23조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3호 위반행위 / 법 제25조제1항제5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7호 위반행위 / 법 제25조제1항제9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0호 위반행위 / 법 제25조제1항제11호 위반행위 법 제25조제1항제12호 위반행위 / 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 위반행위

# 상생협력법 위반에 대한 벌점 제도

##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위반 및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상생법 제27조, 시행규칙 제5조의4)

	행정 제재 유형	벌 점
1	법 제2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2.0
2	법 제28조 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1.5
3	법 제27조제2항, 제4항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0
4	법 제27조 제3항,제4항 및 법 제28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공표한 경우	3.1



### 벌점의 경감 기준

- ✓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관련한 포상을 받은 것으로 중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2점 경감
- ✓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된 경우 : 2점 경감
- ✓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  
대표자가 교육명령 이행하면 0.5점 경감, 담당 임원이 이행한 경우 0.25점 경감
- ✓ 납품대금조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경우 : 기본점수와 추가점수 합산(0.25~2.0점) 경감

# 상생협력법 위반에 대한 벌점 제도

## 교육명령 제도

- 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요구 및 제28조 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당해 기업에 부과된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명령 조치(법 제28조의2)

[벌점기준] 당해년도 부과된 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이 4점 이상인 경우



##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제도

중기부 장관은 벌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법 제27조 제5항)

[벌점기준] 위탁기업의 최근 3년간 누산벌점이 5점 초과하는 경우

# 상생협력법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 벌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41조, 제43조, 시행령 제28조 별표2)



**[벌금]** 상생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표 후 1개월 이상 분쟁조정 시정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 ✓ 교육명령 미이행 : 100만원
- ✓ 약정서 미발급 : 500만원
- ✓ 자료제출 거부 또는 거짓 제출, 조사방해 등 : 1,000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4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해하지 않은 경우	5,000만 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0만 원

# 기타 입증책임 문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 입증책임 경감 및 전환



- 다음 사항의 분쟁해결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법 제25조의2)
 

1) 부당수령거부(제1항 제1호 전단) 3)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제1항 제3호) 5) 물품 등의 구매강제(제1항 제5호)	2) 납품대금 감액(제1항 제1호 후단) 4) 납품대금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제1항 제4호)
--	--
-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40조의2 제1항)

## 징벌적 손해배상



위탁기업이 보복조치 금지(법 제25조 제1항 제14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발생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40조의2 제2항)



감사합니다

